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 약관

제정 2024. 05. 20

개정 2025. 02. 18

개정 2025. 05. 13

개정 2026. 03. 24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인투자용국채규정」이 정하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계좌) ① “전용계좌”란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 나.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3.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종목)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② 개인투자용국채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만기에 복리로 계산한 이자총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하 “복리채”라 한다)
2. 사전에 공표한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하 “이표채”라 한다)

제4조(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

일까지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하고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이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예:3년 만기)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제5조(매입한도) 고객은 연간 2억원의 한도로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할 수 있고, 종목의 구분없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을 수 없다.

제6조(청약접수) ① 전용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청약 접수 가능시간 중에 영업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약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접수 가능시간 내에는 철회 및 재청약을 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청약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전용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청약증거금을 전액 충족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청약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청약배정 및 청약증거금 반환) ① 회사는 청약 종료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개인투자용국채 규정」에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청약액을 고객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청약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기관의 청약자에게 배정 결과를 고지하고, 고지 후 납입 받은 청약증거금 중에서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발행)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단,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중도환매) ① 중도환매 신청에 의한 환매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단, 환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법정공휴일이면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국채의 등록을 말소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② 고객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중도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의 정수배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중도환매 접수 가능시간 중에 영업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중도환매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접수 가능시간 내에는 철회 및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월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도환매 불가할 수 있다.

제10조(원금상환과 이자지급)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법정공휴일이면 직후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해당 국채의 등록을 말소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② 복리채의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율을 1년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③ 이표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째 되는 날 : 표면금리를 1년 단리로 계산한 금액
2. 만기일 : 만기보장수익률(YTM,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총 수익률을 말한다.)을 적용한 미지급된 이자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sum_{k=1}^n (\text{원금} \times \text{가산금리}) \times (1 + \text{표면금리} + \text{가산금리})^{(n-1)}$$

n = 만기

④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의 사유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 받은 자가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날부

터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전받은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한다.

제11조(양도제한)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securities.miraeasset.com>이용안내/문의>이용안내가이드>트레이딩가이드>트레이딩>매매수수료/예탁금이용료>예탁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고객이 요구할 경우 예탁금이용료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 회사는 제1항의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 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MS, MMS 등)

2. 고객 정보에 등록된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열람 요구)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 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24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6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